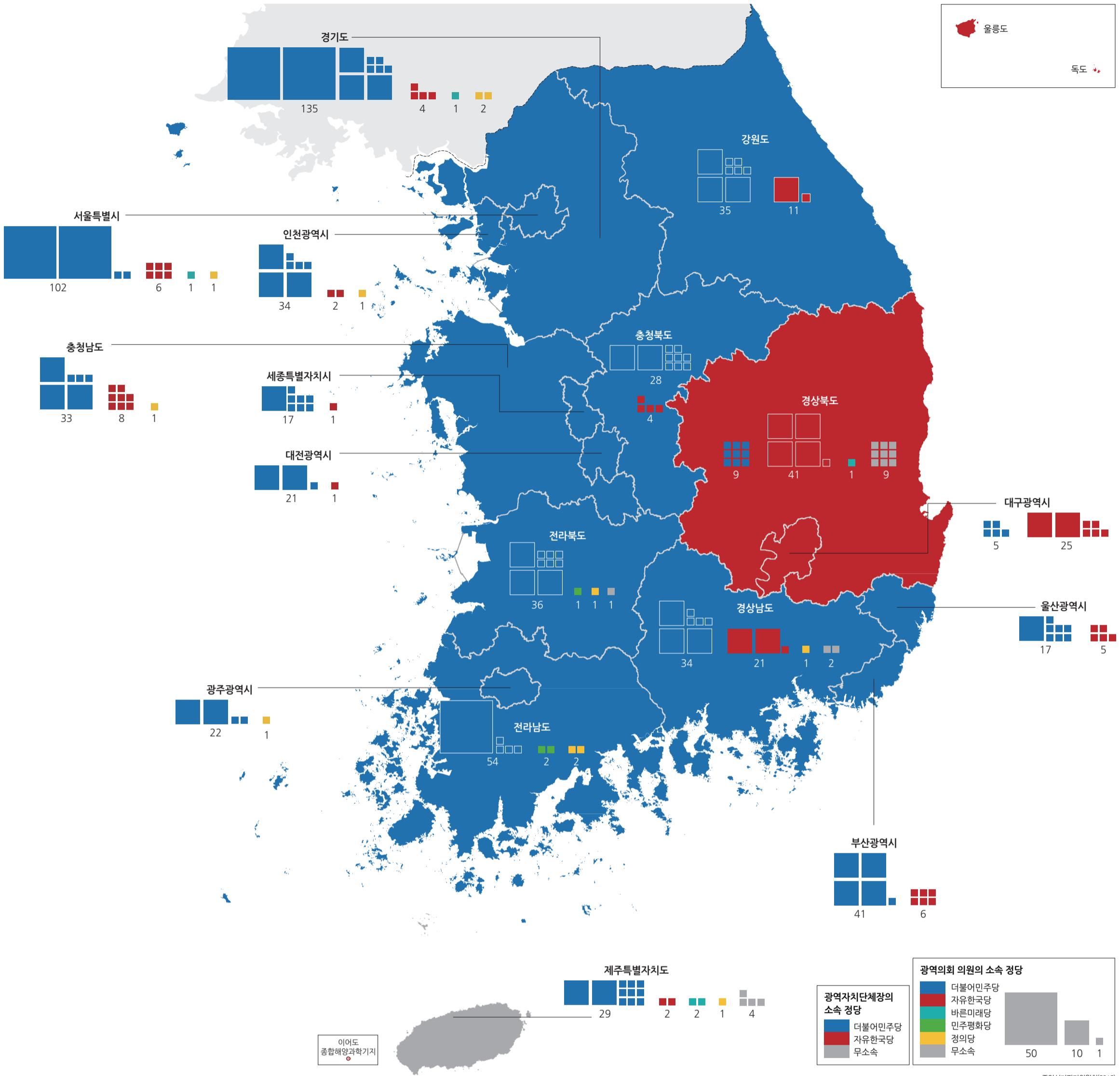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지방자치와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 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지역 자체의 정치 및 행정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관리, 주민의 복리 증진,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 지역 개발과 주민의 생활 환경 시설의 설치·관리,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 등에 관한 사무가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지역과 주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민 참여, 지방 사무, 자치권 및 자주 재원 등을 주요 구성 요소로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 사무, 자치권 및 자주 재원 등 지방의 권한을 확대 하려는 지방 분권의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주민들이 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 단체를 의미하고, 공적 법인으로서 자격을 가지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등 광

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자치구) 등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 등 두 가지 범주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1개 특별시(서울),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개 특별자치시(세종),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 특별자치도(제주) 등 총 17개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아울러 그 아래 77개 시(2개 행정시 포함), 82개 군, 101개 구(32개 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등이 있으며, 그 아래 가장 낮은 행정 단위로서 228개 읍, 1,184개 면, 2,098개 동 등이 지방 행정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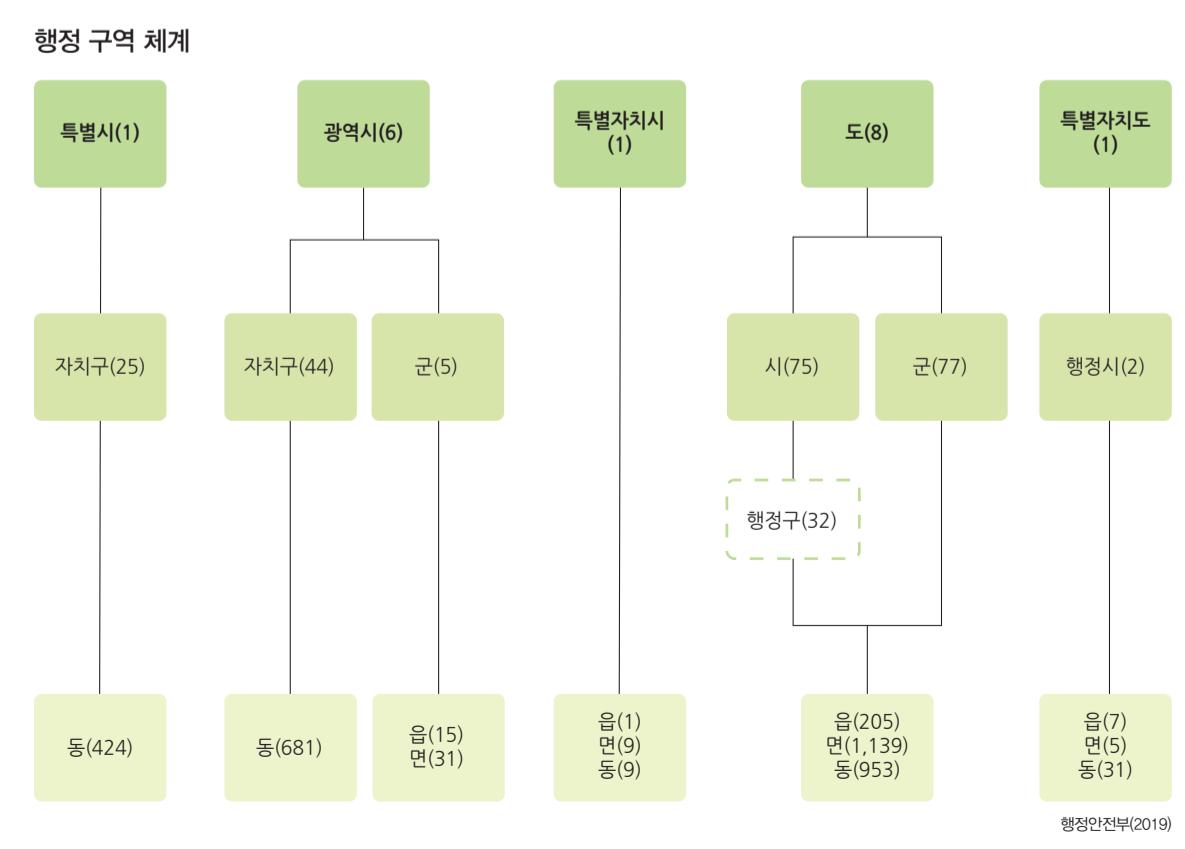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대표적 수단이 바로 선거 참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 참여 권리가 갖는다. 지방 선거의 결과에 따라 광역 및 기초 단위 지방의회가 구성되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자치구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선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은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갖는다.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의 증대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는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에 따라 시작된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권한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행정 구역 일반 현황	구분	시·군·구			행정시·행정구		읍·면·동			(단위: 개)
		계	시	군	구	계	읍	면	동	
전국	226	75	82	69	2	32	3,510	228	1,184	2,098
특별시	25				25		424			424
부산	16		1	15		206	3	2	201	
대구	8		1	7		139	6	3	130	
광역시	10		2	8		152	1	19	132	
인천						95				95
광주	5			5		79				79
대전	5			5		79				79
울산	5		1	4		56	5	7	44	
특별자치시						19	1	9	9	19
세종	31	28	3		17	564	36	104	424	
경기						193	24	95	74	193
강원	18	7	11			4	153	15	87	51
충북	11	3	8			2	207	25	136	46
충남	15	8	7			2	243	15	144	84
전북	14	6	8			297	33	196	68	297
전남	22	5	17			2	332	36	202	94
경북	23	10	13			5	308	21	175	112
경남	18	8	10			2	43	7	5	31
특별자치도	제주									43

행정안전부(2019)



행정안전부(2019)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선거 투표(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선거 투표(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광역		기초		교육	
	자치단체장	의원		자치단체장	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특별시, 광역시, 도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1952년 도입되어 1960년까지 치러졌다.

이후 군사 정권에 의해 지방의회의 폐쇄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제 전환으로 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1987년 개헌 후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8년 이후 4년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현재는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자치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영주권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영주권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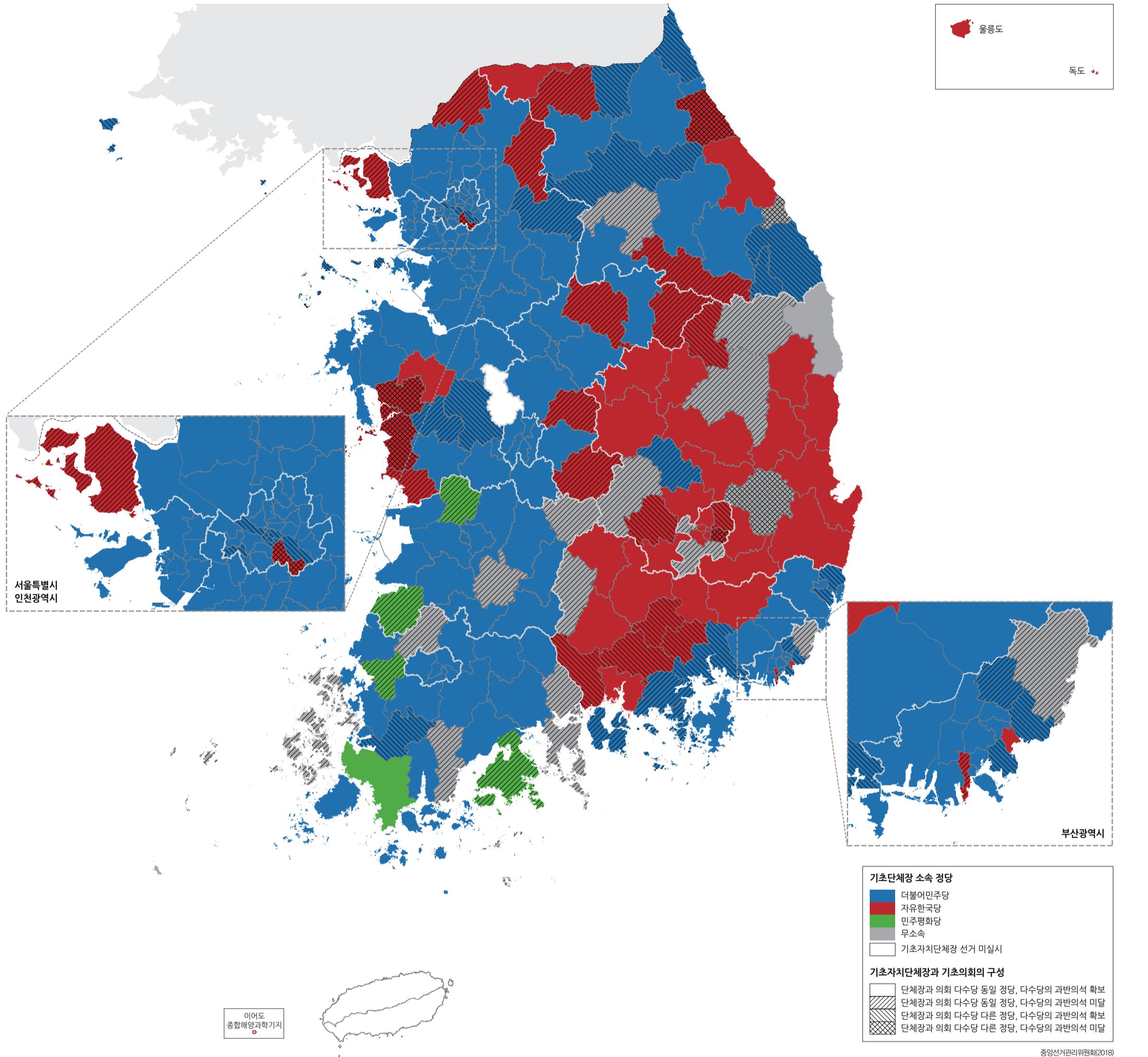
역시 15개 시도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대구와 경북은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총 824명의 시도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이 전체 시도의원의 79.1%에 해당하는 6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유한국당(137명, 16.6%), 무소속(16명, 1.9%), 정의당(11명, 1.3%), 바른미래당(5명, 0.6%), 민주평화당(3명, 0.4%) 순이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선전을 하면서 10명의 후보가 비례대표 선출되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합계(명)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4	2	-	-	1	17	
광역의원 합계	652	137	5	3	11	16	824
광역의원 선거	605	113	1	1	1	16	737
비례대표	47	24	4	2	10	-	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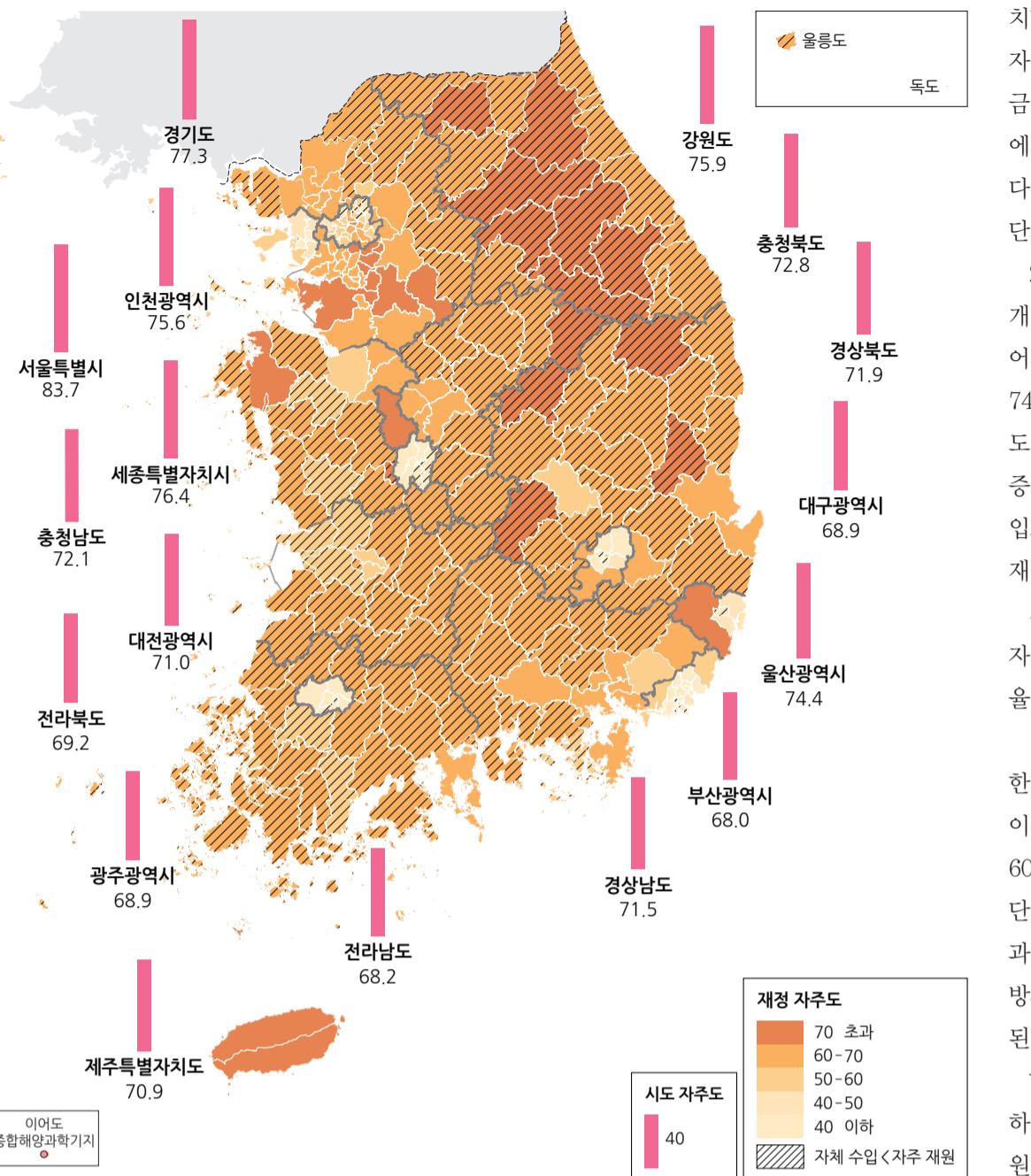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합계(명)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151	53	-	5	-	-	17	226
기초의원 합계	1,638	1,009	21	49	26	11	172	2,926
지역구	1,400	876	19	46	17	11	172	2,541
비례대표	238	133	2	3	9	-	-	3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지방 재정과 지방 분권

재정 자주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재정 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대한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 수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재정 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의존 재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지방 교부세와 재정 보전금, 조정 교부금 등의 이전 재원)을 합한 것을 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나눈 값의 비율이다. 재정 자립도는 재원 조달 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재정 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나타낸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는 중앙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전 재원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전 재원을 감안하여 계산된다.

2019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 51.4%이다.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와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94%에 해당하는 213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이어서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편이다. 한편 2019년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주도는 74.2%이다. 재정 자주도는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 재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도의 경우 평균 23% 증가하였고, 시, 군, 구의 경우 각각 평균 30%, 47%, 18% 증가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자주 재원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체 수입보다 자주 재원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 5곳이며, 자체 수입보다 자주 재원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130곳에 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자치단체 예산의 규모가 자체 수입의 증가보다 많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중앙 정부, 자치단체, 지방 교육의 전체 지출 규모는 약 770.9조 원에 달한다. 중앙 정부에서 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으로 재원을 이전하고, 자치단체 또한 지방 교육으로 재원을 이전하고 있으므로 이전 재원을 감안한 실제 중앙 정부, 자치단체, 지방 교육의 전체 재정 사용액은 약 605조 원이며 그 비율은 각각 49.4:38.1:12.5이다.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이자 중앙 정부와 구분되는 지방 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크게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채, 보전 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중앙 정부로부터의 이전 재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2018년 현재 78.3:21.7로 국세가 지방세에 비해 3.6배 많다. 하지만 지방세 비율이 지방 정부의 지출에 비해 낮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2019년 기준 약 170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 정부로 이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 분권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2019년 당초 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와 재정 자립도

구분	합계	재정 자주도(재정 자립도)			
		시도 기준	광역본청	시	군
재정자주도(재정 자립도) 평균(%)		75.3(53.4)	61.1(48.9)	66.4(36.8)	65.2(18.3)
30 이하	2 (158)	- (3)	- (4)	- (33)	- (78)
30~50	47 (66)	- (6)	7 (7)	- (34)	- (4)
50~70	169 (17)	4 (7)	7 (4)	66 (8)	70 (-)
70 초과	25 (2)	13 (1)	3 (2)	9 (-)	12 (-)
합계	243 (243)	17 (17)	17 (17)	75 (75)	82 (82)
자체 수입 < 자주 재원		5	37	7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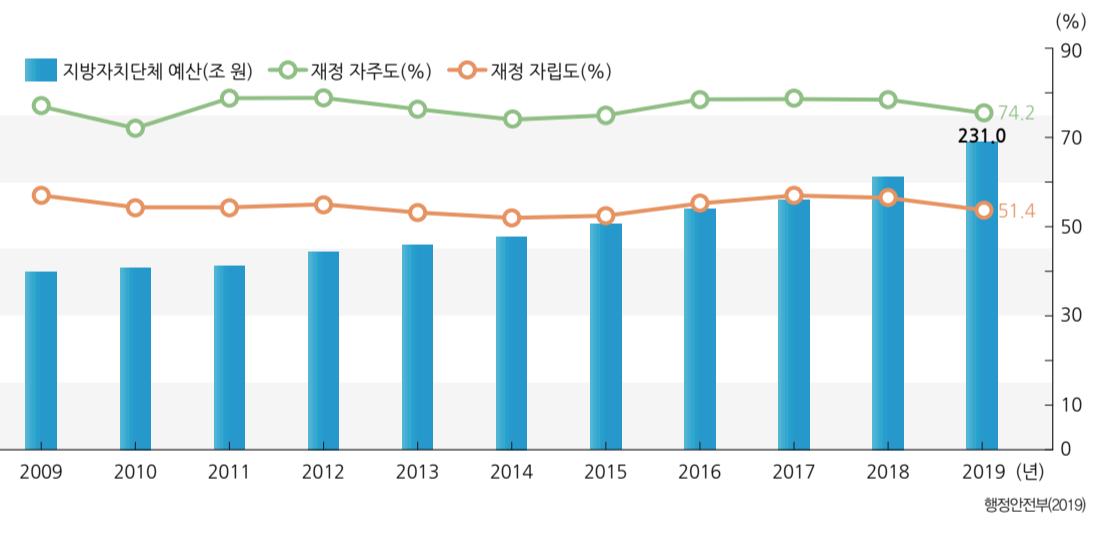
* 주: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계산 시 시도는 순계급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회계 간 또는 자치단체 간 충복 부문을 배제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총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회계 간 또는 자치단체 간 충복 계산된 부문의 공제 없이 단순 합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2019)

행정안전부(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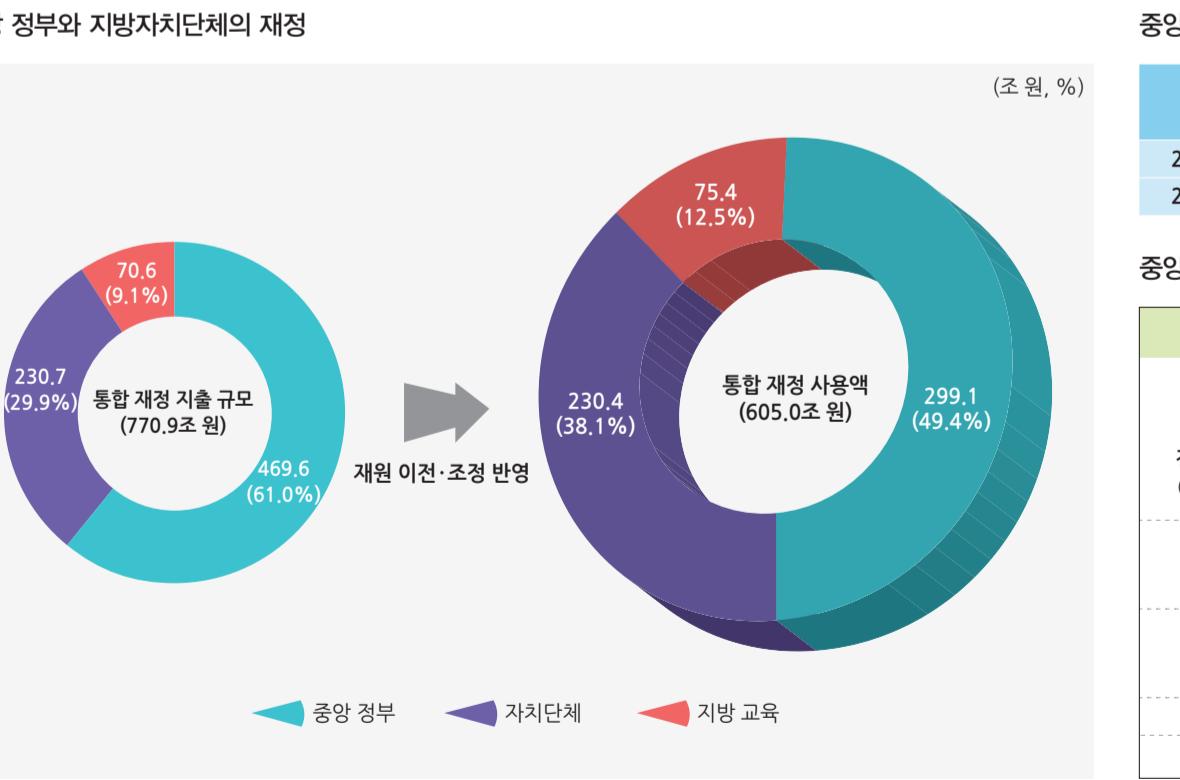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사무 구분

국제	법령상 총사무	국가 사무			지방 사무
		계	국가 사무	지방 위임 공동 사무	
2009년	42,316	33,864	80.0%	3,539	20.0%
2013년	46,005	31,161	67.7%	1,018	22.3%
지방자치법전위원회(2013)					
중앙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이양					
국민의 정부·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특별법 개정, 1999. 01.)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특별법 개정, 2008. 0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령 제정, 2003. 04.)					
	지방행정체계개편위원회 (특별법 개정, 2010. 10.)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대통령령 제정, 2004. 11.)				
이양 확정: 1,514	이양 확정: 1,587	이양 확정: 127	이양 확정: 571		
이양 원료 기준: 1,219	이양 원료 기준: 770	이양 원료 기준: 188	이양 원료 기준: 11		
지방분권위원회(2019)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5년이 넘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이 중앙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 권한 역시 중앙 행정 기관의 비율이 지방 정부에 비해 높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역대 정부에서 중앙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2009년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율은 80:20이었으며, 2013년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율은 67.7:32.3으로 지방 사무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의 사무 중 실제로는 지방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했던 사무와 국가의 고유 행정 권한이었던 사무 중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한 결과이다.

그동안 단순한 중앙 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66개 법률에 명시된 571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 정부로 이전할 계획이다.